

의안 번호	1867	【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】 심사 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2. 3.(금) 이명녀 의원 외 10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사업 및 지원(안 제5조)
- 심의 · 자문기관(안 제6조)
- 공공시설 활용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9조)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조례안은 중구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,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-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제정 내용 전반을 검토한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· 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 · 규칙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 및 그 운영 · 관리
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· 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 ·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產管理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3. 농림 ·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 ·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 · 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· 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· 지원

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 · 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 ·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 ·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파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유아원 · 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운영 · 지도

나. 도서관 · 운동장 · 광장 · 체육관 · 박물관 · 공연장 · 미술관 · 음악당 등 공공 교육 · 체육 ·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